

식조검사제도 및 식조검사의 실태

본고는 일본 「식조검사제도 및 식조검사의 실태」에 관한 법률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식조검사제도 및 식조처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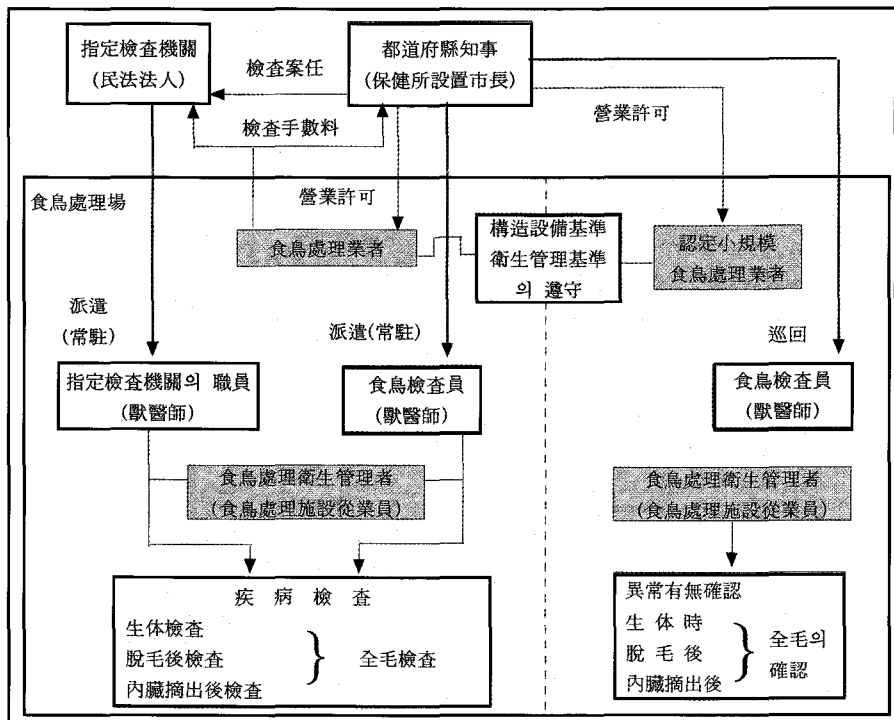
1. 식조검사제도의 개요

식조처리 사업의 규제 및 식조검사에 관한 법률(1990년 6월 29일 법률 제 780호)(발췌)

1)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食鳥처리사업에 대하여 위생상의 견지에서 필요한 규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식조검사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식조육 등에서 야기되는 위생상의 위해발생을 예방하고 따라서 공중위생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1.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의 규격, 기준의 준수



2) 정의

제2조 이 법률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용어의 의의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一. 食鳥, 鷄, 오리, 칠면조 기타 일반적으로 식용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政令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二. 식조도체 · 도살하고 또한 우모(털)를 제거한 식조로서 그 내장을 적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三. 식조의 속을 뺀 것 = 나까누끼(申拔) 도체 · 식조도체에서 그 내장을 적출한 것을 말한다.
- 四. 식조육(肉) 등 그 내장을 적출한 후의 식조의 육(고기) 내장, 뼈 및 피(皮)를 말한다.
- 五. 식조처리, 다음에 계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식조를 도살하고 또한 그 우모(털)를 제거할 것
 - 나. 식조 도체의 내장을 제거할 것
- 六. 식조처리장, 식조처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식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위생관리기준(식조처리장의 위생적 관리, 식조육 등의 위생적 취급)

(위생관리 등의 기준)

제11조 식조처리업자는 후생노동성령(厚生勞動省令)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조처리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식조, 식조도체, 식조 내장적출(申拔) 도체 및 식조육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기타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식조처리위생관리자의 설치

(식조처리위생관리자)

제12조 ①식조처리업자는 식조처리를 위생적으로 관리시키기 위하여 식조처리장마다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식조처리 위생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면 안된다.

②식조처리위생관리자는 식조처리에 관하여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 혹은 처분에 관계되는 위반을 하지 않도록 식조처리에 조사하는 자를 감독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식조처리위생관리자가 될 수 없다.

- 一. 수의사
- 二. 학교 교육법(소화 22년 법률 제26호)에 근거한 대학, 구대학령(대정 7년 칙령 제388호)에 근거한 대학 또는 구 전문학교령(명치 36년 칙령 제61호)에 근거한 전문학교에 있어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 일본 코너 】

三.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식조처리위생관리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四. 학교 교육법 제47조에 규정된 자 또는 후생노동성령에 따라 이들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식조처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또한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강습회의 과정을 수료한 자

④식조처리업자는 식조처리위생관리자를 두었을 때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도부현지사에게 그 식조처리위생관리자의 성명,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식조처리위생관리자를 변경시켰을 때도 또한 같다.

제13조 도도부현지사(都道府縣知事)는 식조처리위생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했을 때 당해 식조처리위생관리자에게 계속 그 직무를 수행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조처리업자에 대해 그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 一.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 혹은 처분을 위반했을 때
- 二. 전조 제2항에 규정한 직무를 태만했을 때
- 三.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계되는 사항이 동항(同項)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했을 때

식조검사

1) 식조검사

(식조검사)

제15조 ①식조처리업자는 식조를 도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식조의 생체상황에 대하여 도도부현지사가 시행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

산안하고 깨끗한
HAIMARROW **해마로치킨**

Chicken

TEL : 02-424-8211 FAX : 02-3431-9180



ISO9001인증업체
KS표식품 생산업체



(주) TS 해마로식품
TS HAIMARROW FOODS Co., Ltd.



식조검사제도 및 식조검사의 실태

②식조처리업자는 식조도체의 내장을 적출코자 할 때에는 그 식조도체의 체표(體表)상황에 대하여 도도부현지사가 시행하는 검사(이하 「탈모후 검사」라고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식조처리업자는 식조도체의 내장을 적출했을 때에는 그 내장 및 식조 내장적출(中拔) 도체의 체벽내측면(體壁內側面) 상황에 대하여 도도부현지사가 시행하는 검사(이하 「내장적출후 검사」라고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④식조처리업자는 그 식조처리장의 구조 및 설비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장적출후 검사를 받을 때, 동시에 탈모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⑤전항에서 정하는 외에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검사(이하 「식조검사」라고 한다)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방법 및 수속(手續)에 의하여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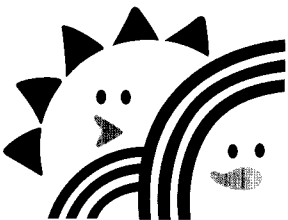
⑥식조처리업자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식조도체의 체표(體表)상황 또는 식조 내장적출(中拔) 도체에 관계되는 내장 및 그 체벽(體壁)의 내측면 상황에 대하여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届出)한 식조처리위생관리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요지의 확인을 시켰을 때 도도부현지사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탈모후 검사 및 내장 적출후 검사의 방법을 간략화(簡略化) 할 수 있다.

(수수료)

제42조 도도부현은 지방자치법(소화 22년 법률 제67호) 제227조의 규정에 근거한 식조검사에 관계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이 시행하는 식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수료를 당해 지정검사기관에 수납시켜 그 수입으로 할 수 있다. C

〈다음호에 계속...〉

닭고기 · 오리고기의 품질을 말하는 이름



치키 더키

Chicky Ducky

www.fine korea.co.kr



(주) 화인코리아

TEL:061-331-8383 FAX:061-331-8387